

◎ 건설부령 제431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12. 31.

■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의 개정(1986. 12. 31, 법률 제4,000호) 및 자연공원법시행령의 개정(1987. 7. 1, 대통령령 제12,205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함(영 제4조의2).
- 나. 자연환경지구내에서 허용되는 공원지정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과 그 부대시설 설치의 허용범위를 정함(영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항제1호중 “행정구역별 면적조서”를 “행정구역별 면적을 표시한 서류”로, 동항제2호중 “현황조서”를 “현황을 표시한 서류”로, 동항제3호중 “도면조서”를 “도면”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토지의 소유구분(국유·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사찰소유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 제3조 제1항제5호중 “범위와 수량 또는 규모”를 “범위와 규모”로, 동항제6호중 “면적조서”를 “면적을 표시한 서류”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공원관리청(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게

- 제4조의3 제1항).
- 다. 취락지구내에서 허용되는 의원, 약국, 이·미용원, 일상용품판매시설등 설치허용범위를 정함(영 제4조의3 제2항).
- 라.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설계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4).
- 마. 국립공원에 있어서의 수익자부담금의 징수방법을 다른 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같이 정함(영 제15조의2).
- 바. 공원명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등을 정함(영 제15조의4).
- 사. 국립공원협회의 조직·임원·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4조 내지 제26조).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

- 제4조 제4호본문중 “주요자원으로 보호할 대상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주요보호 대상자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면적조서”를 “면적”으로 하며, 동조제6호본문중 “계획조서”를 “계획”으로, 동호가목중 “교통운수시설의 조서”를 “교통운수시설”로, 동호나목중 “공급시설의 조서”를 “공급시설”로, 동호다목중 “단독시설의 조서”를 “단독시설”로 하고, 동호라목중 “유치할시설의”를 “설치할 주요시설의”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등에 관한 계획
-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의2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미한 사항) 영 제8조의2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 함은 삭도·케도·골프장·스키장·승마장·단체연수원·동물원 및 호텔의 신설 또는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제외한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용도지구내에서의 행위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내의 공원지정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의하여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개축·재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1.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100제곱미터이하의 증축
2. 주거용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부대시설의 설치
-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내에서의 의원, 약국, 이·미용원 및 일상용품 판매시설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에 시설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의 최소한의 규모
2. 제1호와의 경우에는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규모

제4조의4 (기본설계의 세부기준)

- ①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설계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시설지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 2. 숙박시설지내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호텔과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 3. 공공시설지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집단시설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이하가 되도록 한다.
- 5. 공원시설별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등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② 비공원관리청은 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고한 기본설계의 내용과 달리 공원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공원관리청의 기본설계공고전에 공원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시설의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미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의5 (기본설계의 공고등) ① 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의하여 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그 기본설계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기본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공고 및 공람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1호중 “농어촌지구에서의 농수산업용”을 “취락지구에서의

주거용 및 농수산업용”으로, 동조제2호내지 제4호중 “농어촌지구”를 각각 “취락지구”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6호중 “농어촌지구”를 “취락지구”로 한다.

5.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내에서의 풀벌 및 조류를 기르거나 1가구 5두이하의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제9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원관리청(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

제10조 제1호중 “농수산업용”을 “주거용 및 농수산업용”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도지사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제1항중 “관할 도지사에게”를 “국립공원 관리청에”로 한다.

제1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수익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공원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원사업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②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의 승계로 인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한 수익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금을 면제한다.

- 1. 소유토지의 2분의 1이상을 당해 공원사업을 위하여 매도하였거나 수용당한 자
- 2. 소유토지의 5분의 1이상을 당해 공원사업을 위하여 기부한 자
- 3.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그 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의 소유자
- 4.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위토지의 소유자

④ 공원관리청은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부담금의 종류·금액·납부장소·납부기한 및 납부방법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부과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공고) ① 법 제3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 1. 제한 또는 금지할 공원구역 및 그 위치
- 2. 제한 또는 금지의 기간
- 3. 제한 또는 금지의 목적과 그 사유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지지역의 입구·출구등 일반인이 보기쉬운 곳에 공고된 내용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명예관리인의 자격 및 위촉방법등) ① 법 제3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공원구역이 속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원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원구역안에 있는 사찰의 승려
 3.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의 회원
 4.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명예관리인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명예관리인의 업무·활동등에 관한 사항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공중변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공중변소는 수세식으로 하고,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용수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산의 정상에 설치하는등 수세식으로 하기가 부적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쓰레기용기는 철·시멘트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중전의 제16조의2) 제2항중 “법 제17조제1항단서”를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내지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국립공원협회의 조직) ①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두며, 자연 자원연구소를 부설한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5조 (협회의 임원) 협회에는 임원으로서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26조 (협회의 운영등) 협회의

사무국·전문위원회·자연자원연구소 및 지부의 조직과 운영. 임원의 선출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위치도 : 3부
2. 지적도 : 3부(공원사업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신청인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 1부(공원사업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공원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공원시설관리계획서 : 3부
5. 설계도면(평면도, 위치도, 투시도, 조경계획도, 공사비계산서) : 3부

(공원사업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6. 자금계획서와 그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 2부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영 제16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 2부
3.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 2부
4.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영 제16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2부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 제12,342호

기술용역 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12. 31.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改正理由 및 主要骨子

현재 專門技術用役業의 登錄에 있어서 技術士의 배출이 適正水準에 현저히 미달되는 분야(27個)에 대하여는 1987年 12月 31日 까지는 技術士를 高級技術者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電氣應用·電氣通信등 7個 專門分野에서는 아직도 技術士의 배출이 適正水準에 현저히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技術士를 高級技術者로 대체할 수 있는 期限을 1990年 12月 31日 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기술용역 육성법시행령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0904호 부칙 제3항중 “이 영 시행당시의”를 삭제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를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198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제공>

'88검정시험일정 및 종목

◇ 기술사

회 별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예정)	구비서류 제출	경력심사 발표 (예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
제 31 회	3월21일~ 3월24일	4월24일~ 4월27일	5월30일	6월7일~ 6월9일	6월28일	7월11일~ 7월19일	8월1일

◇ 기사

회 별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예정)	필기시험면제자 원서 접수 ·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필기합격자 결정·실기시험실비납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
제 1 회	(필기 면제자 검정)			1월4일~1월7일	1월31일~ 2월3일	2월22일
제 2 회	3월2일~ 3월5일	3월27일	4월18일	4월18일~4월21일	5월15일~ 5월17일	6월8일
제 3 회	3월14일~ 3월17일	4월10일	4월25일	4월25일~4월28일	5월29일~ 5월31일	6월20일
제 4 회	4월18일~ 4월21일	5월15일	6월8일	6월8일~6월11일	7월3일~ 7월5일	7월25일
제 5 회	6월13일~ 6월16일	7월10일	8월8일	8월8일~8월11일	9월4일~ 9월6일	9월29일
제 6 회	7월4일~ 7월7일	7월31일	8월17일	8월17일~8월20일	9월11일~ 9월13일	10월17일
제 7 회	10월1일 9월1일	10월16일	10월31일	10월31일~11월3일	11월27일~ 11월29일	12월19일
제 8 회	10월10일~ 10월13일	10월30일	11월14일	11월14일~11월17일	12월4일~ 12월6일	12월29일

◇ 시험과목

분야	자격종목및등급	종목코드	검정방법	실기시험 금액	시 험 과 목
건축	건축기술사 (건 축구조)	0490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에 관한 구조의 계획, 계산 및 감리, 기타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
	건축기술사 (건 축기계 설비)	0501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기계설비의 계획과 설계, 감리 및 의상, 기타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건축기술사 (건 축전기 설비)	0502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감리 및 의상 기타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건축기술사 (건 축시공)	0510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건축시공, 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
건축	건축기사 1 급	1630	필기시험		1. 건축계획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관계법규
	건축기사 2 급	2530	필기시험	2,000	건축시공
건축	건축제도기능장	3550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4,400	1. 건축계획각론 2. 3.4.5. 1급과 동일
	건축시공기능장	3621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제도, 계획, 재료, 시공, 구조, 건축관계법규,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시공기능장	3621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구조, 시공, 재료, 제도, 적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8문화재 수리기능공 노임단가 기준

1988. 1. 30.

직 종 명	단가(원)	비 고
도 편 수	21,060	본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기준임.
목 조 각 공	17,160	
한 식 목 공	16,080	
한식목공조공	12,410	
드 잡 이 공	17,500	
한 식 와 공	26,250	
한식와공조공	16,390	
석 조 각 공	19,040	
특 수 화 공	18,840	
화 공	14,300	
한식미장공	16,050	

◎ 체신부고시 제71호

통신선로 설비에 관한 세부설계도 표준권장 규격 공시

1987. 12. 2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55조 및 체신부고시 제71호 (86. 7. 1) 의 제13조 규정의에거 구내통신선로설비에 관한 세부설계도의 표준권장규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시한다.

1. 구내통신선로 설비에 관한 세부설계도의 표준권장규격 가. 공동주택

1) 인입관로 및 인입케이블

가) 일반사항

나) 예시도

2) 옥내배관 및 배선

가) 일반사항

나) 예시도

나. 단독주택

1) 옥내배관 및 배선

가) 일반사항

나) 예시도

2. 시행일: 1987년 12월 12일

3. 내용: 다음페이지부터 게재

구내통신선로설비에 관한 표준권장규격

구내통신선로설비 법령

1. 공동주택

가. 인입관로 및 인입케이블

1) 일반사항

(가) 공통사항

① 지하관로 시설 및 인입케이블의 건설책임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분계점) 및 유선방송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분계점)에 의한다.

○ 지하관로시설의 건설 책임

- 통신공사 : 분계점의 인수공까지 (인수공 포함)
- 시설주 : 구내통신선로 설비측의 최초 단자에서 주택단지 분계점의 인수공까지 관로 건설

○ 인입케이블의 건설

- 통신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측의 최초단자 (전화용 : 주배선반, 주단자함 등 · 유선방송용 : 분배기함, 분기기함 등) 까지 포설 및 성단

② 구내통신선로 설비측의 최초단자는 1~2층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지하 1층에 설치할 경우는 방습 및 오염되지 아니하는 환경조건을 구비하고 작업상 지장이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

③ 공동구내의 케이블 포설은 케이블지지철물을 사용한다.

(나) 전 화 용

① 심선접속은 접속자접속 또는 콘넥타 접속으로 한다.

② 주배선반, 주단자함 등은 접지를 하여야 하며, 주배선반에는 접지시험 단자를 설치한다.

③ 기타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 공시를 적용한다.

(다) 유선방송용

① 지하관로의 규격은 인입케이블 외경의 2배이상으로 한다.

② 동축 케이블의 접속시는 콘넥타 접속으로 한다. 다만, 편조형고주파 동축케이블 접속시는 납땜 접속으로 할 수 있다.

③ 분배기함, 분배증폭기함, 분기기함 등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유선방송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 공시를 적용한다.

나. 옥내배관 및 배선

1) 일반사항

(가) 전 화 용

① 세대당 인입회선수 : 2 회선 이상

② 콘센트수

- 국민주택 규모이하 : 거실1개, 침실 각1개 (1개의 침실 : 장려시설로 한다)

- 국민주택 규모이상 : 거실2개, 침실 각1개 (부엌1개 : 장려시설로 한다)

명 칭	범 례
전화용 콘센트 (필수시설)	
전화용 콘센트 (장려시설)	
실내단자함	
중간단자함	
주단자함	
국신용 주단자함	
옥내배관 (입상)	
옥내배관 (입하)	
옥내배관 (통과)	
인 공	
분배증폭기함 (유선방송용)	
수 공	
접 지	
공 동 구	
매입배관 (필수시설)	
매입배관 (장려시설)	
100mm PVC 관로 2조 포설	100mm PVC × 2
0.5mm 100P 시내케이블 1조 포설	0.5 - 100P × 1
0.5mm 100P PE 케이블 및 54mm PVC 관 1조 포설	0.5 - 100PE × 1 (54mm PVC)
0.8mm 옥내선 (2) 2 조 및 16mm PVC 관 1조 포설	0.8 / 2C × 2 (16mm PVC)
직렬유니트함 (유선방송용)	
분배기 함 (유선방송용)	

③ 콘센트의 위치

○ 바닥 (Floor) 에서 30cm 높이가 이상으로 사용상 편리한 곳

(나) 유선방송용

① 세대별 회선의 배관

○ 각층별로 1개의 분배기함을 설치하고 세대당 1회선 이상으로 한다.

② 직렬유니트 단자함수

○ 세대당 1개 이상으로 한다.

③ 직렬유니트 단자함의 위치

○ 바닥 (Floor) 에서 30cm 높이가 이상으로 사용상 편리한 곳

명칭	약어
MDF	MAIN DISTRIBUTION FRAME (주배선반)
M	MAN HOLE (인공)
H	HAND HOLE (수공)
PVC	POLYVINYL CHLORIDE CONDUIT (피·브이·씨 관)
PE	POLYETHELENE CABLE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F/S	FOAM SKIN CABLE (폼 스킨 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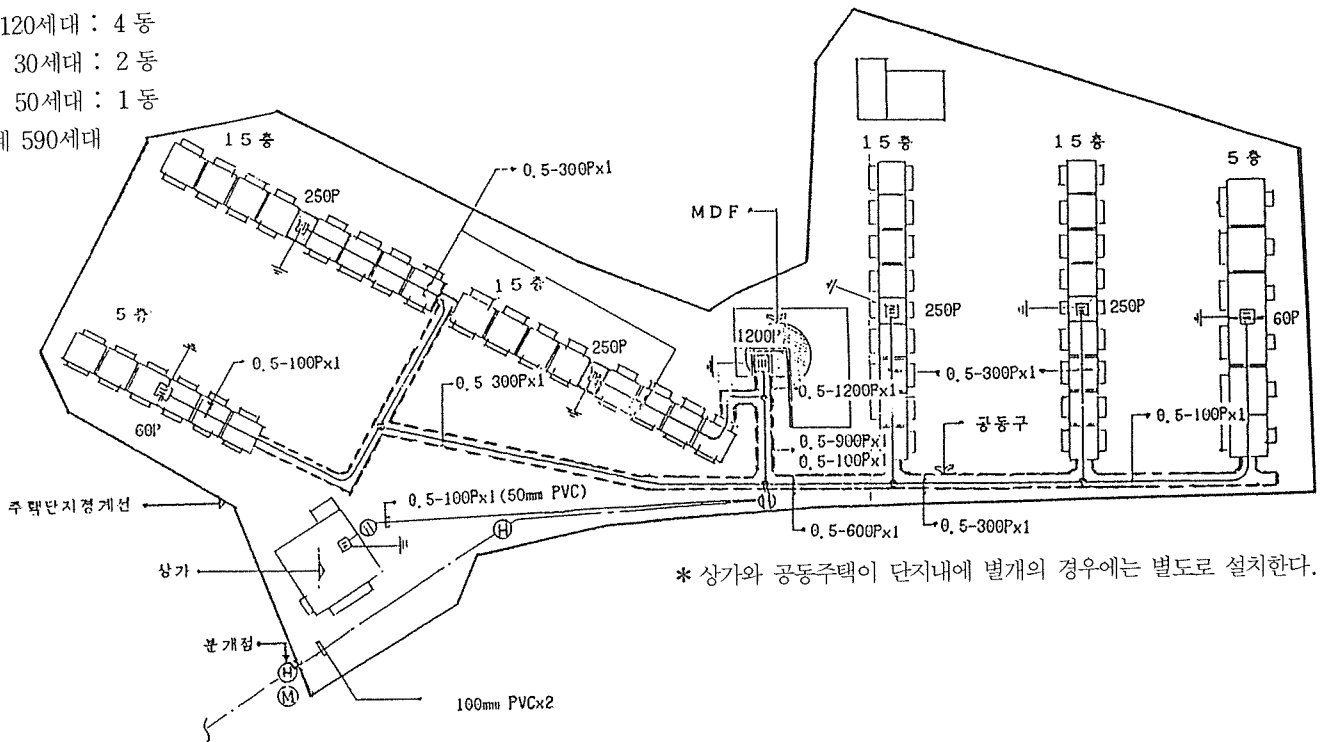
2) 인입관로 및 인입케이블 예시도

15층 120세대 : 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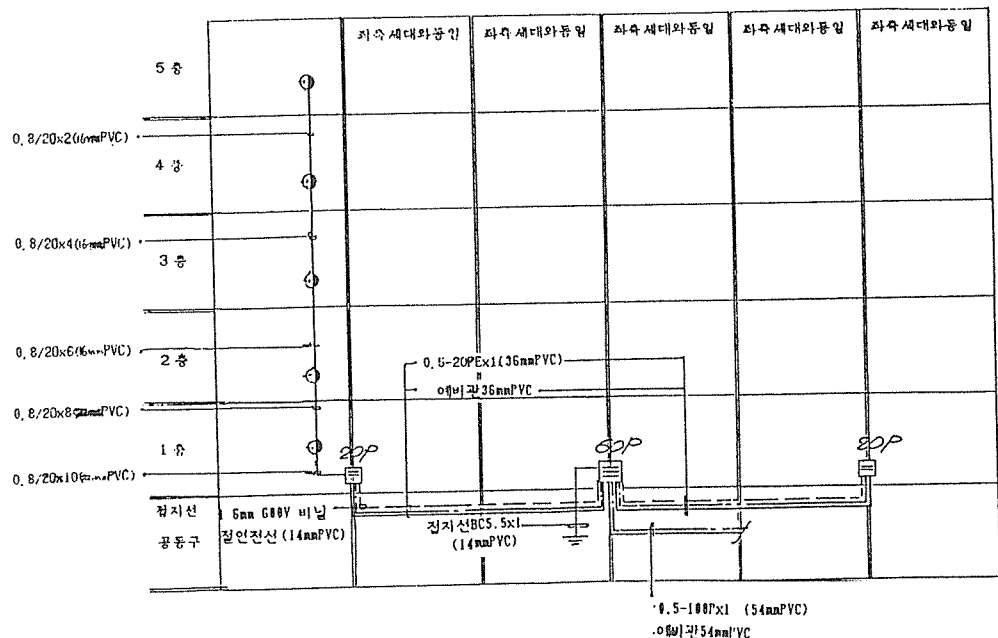
5층 30세대 : 2동

상가 50세대 : 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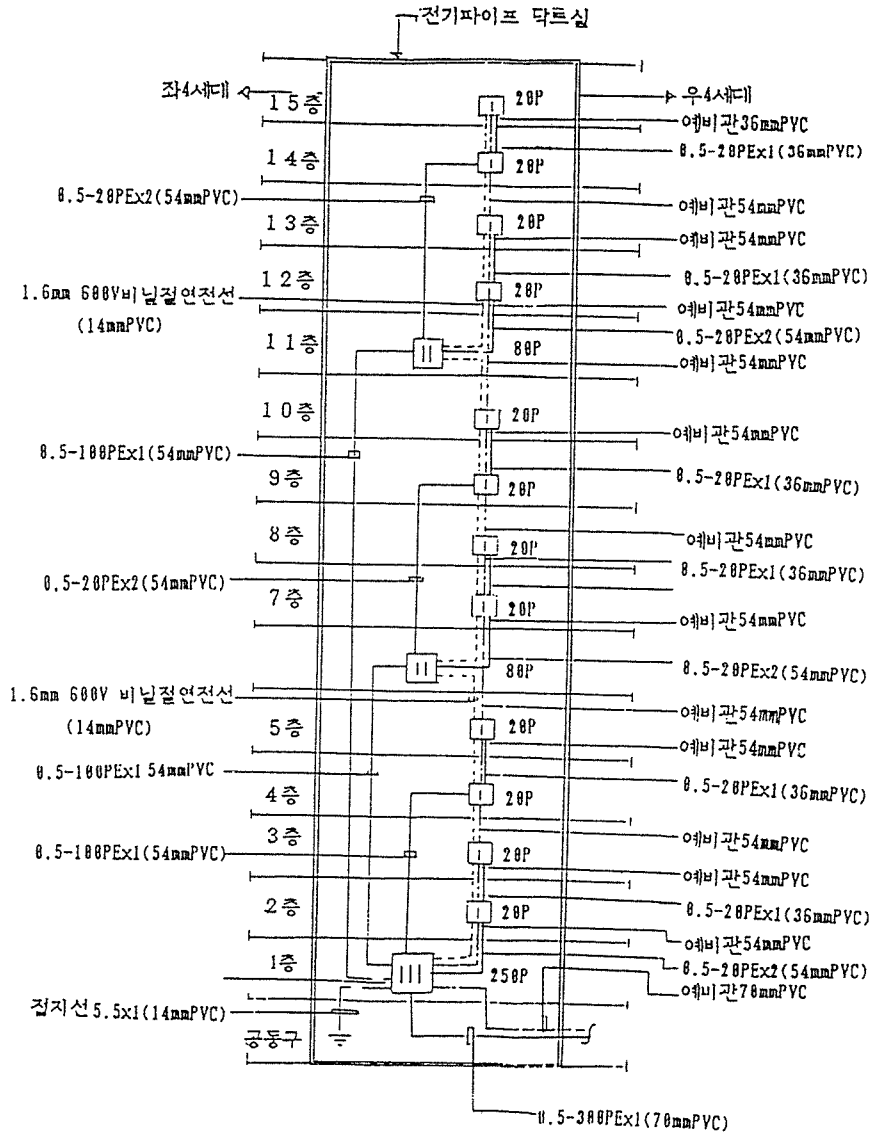
계 590세대



○ 층별 배선계통도 (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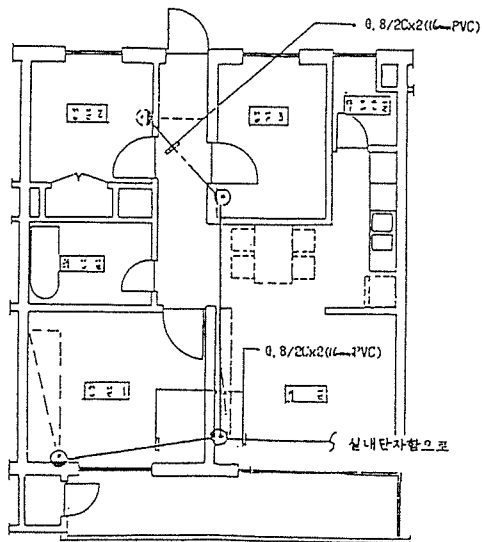


○ 층별 배선계통도 (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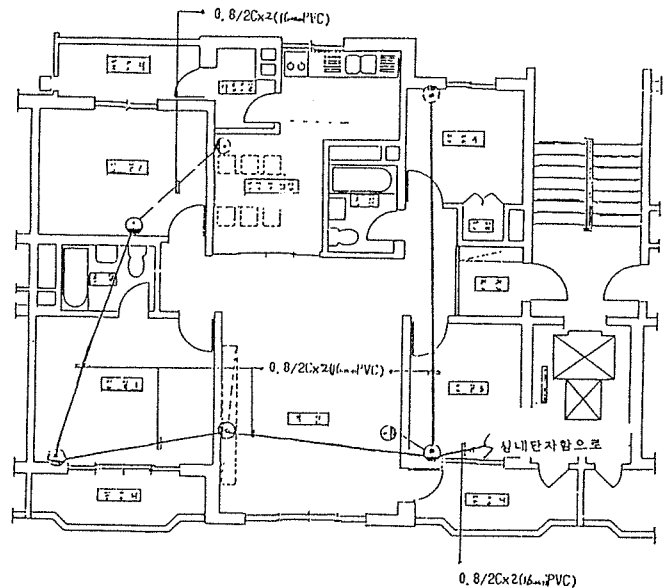


○ 세대별 배선계통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상



2.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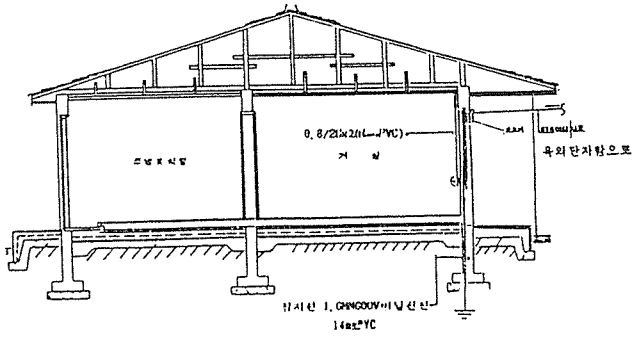
가. 옥내배관 및 배선

1) 일반사항

(가) 전화용

- ① 배선 및 배관용량은 2회선 이상으로 한다.
- ② 콘센트수는 거실 2개, 침실 각 1개, 부엌 (식당) 1개 (장려시설) 및 지하에 있는 방도 콘센트를 설치한다.
- ③ 콘센트위치
 - 바닥 (Floor) 에서 30cm 높이가 이상으로 사용상 편리한 곳

○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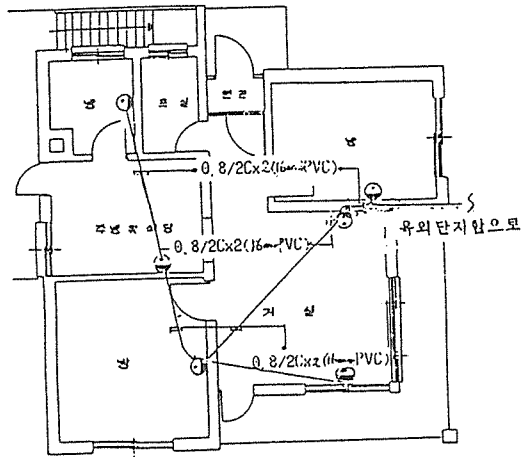


- ④ 기타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 공시를 적용한다.

(나) 유선방송용

- ① 유선방송용 회선의 배관은 1회선으로 한다.
- ② 직렬유닛 단자함은 거실등에 1개이상 설치한다.
- ③ 직렬유닛 단자함의 위치
 - 바닥 (Floor) 에서 30cm 높이가 이상으로 사용상 편리한 곳
- ④ 기타사항은 유선방송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 공시를 적용한다.

○ 평면도



技文堂, 本協會에 圖書寄贈

20여년간 건축관련 전문도서만을 출판하여 온 技文堂 (대표 姜海作) 이 정가 총액 35만 9천 5백 원 상당의 건축관련 도서 46 책을 본협회에 기증하였다. 본 도서는 회원업

무 참고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본협회 자료실에 비치하였다. 기증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서	책명	저자	판형	쪽수	가격	발행일
1	1987요약해설 건축제 법규	장동환	16×23cm 국판	1013	11,000	87. 1. 20
2	건축공정관리 실무	강석환역	"	240	5,000	79. 6. 25
3	최신의 건축입관리	강석환 역	"	140	3,000	79. 6. 15
4	건축기술자를 위한 컴퓨터이용	문태섭 역	3 "	353	5,000	83. 11. 20
5	네트워에 의한 공정계획관리	강석환 역	"	193	6,000	87. 4. 20
6	부동산공법	이주희 저	"	459	66,000	85. 4. 10
7	부동산학개론	장재용편저	"	391	5,500	85. 2. 25
8	유한요소법	이병해 역	"	240	5,000	87. 3. 25
9	건축에서의 컴퓨터이용	전익정 역	"	205	4,000	87. 3. 15
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종문 편 박종두 저	"	328	4,800	85. 6. 10
11	부동산감정 평가론	김경만 편 윤용락 저	"	341	4,800	85. 5. 31
12	건축계획연구	윤장섭 저	"	393	7,000	84. 4. 5
13	건설인의 영어회화	정민준 역	13×19cm 4×6판	215	2,800	86. 2. 10
14	즐거운 건축영어	이문구편역	"	209	2,800	85. 10. 31
15	유럽건축안내	이기승 역	"	210	2,800	86. 6. 20
16	현대건축의 구조와 표현	김규석 역	19.5×21.5 변형국판	316	6,000	77. 9. 5
17	신도시개발	박전자 역	19.5×22.5 변형판	301	6,000	86. 7. 31
18	건축설비시공	박우근 역	19.5×26.5 4×6 배판	262	5,000	85. 3. 15
19	세계의 태양열 건축설계법	박병전 역	"	364	7,500	78. 9. 25
20	공공도서관	신동태 역	"	194	6,000	83. 8. 31
21	강구조설계	이리형 정재철 역	"	248	7,000	87. 1. 31
22	건설공정관리	백경희 양극열 역	"	271	5,500	87. 3. 10
23	건축설계제도의 기본	조병수편저	"	495	11,000	86. 2. 25

순서	책명	저자	판형	쪽수	가격	발행일
24	주택연구	이시을 역	22×30.5 국배판	217	7,500	84. 5. 10
25	세계의 주택건축	안영배 편	"	173	12,000	87. 5. 25
26	빌딩엘리베이터의 상세	이호진 허동국 역	"	176	7,500	79. 8. 10
27	모범주택	김형대편저	"	183	12,000	84. 6. 10
28	설계자를 위한 인체동작, 치수도집	허동국 역	"	149	6,000	84. 7. 30
29	건축의 모형	최장길편저	"	223	9,000	84. 6. 25
30	철골조의 설계와 상세	이리형김수 박학길 역	"	155	6,500	78. 11. 26
31	현대건축집성 (2) 레저시설	현대건축 연구회 역	"	232	12,000	82. 10. 30
32	현대건축집성 (3) 공공복지시설	"	"	181	10,000	82. 10. 30
33	현대건축집성 (4) 오피스빌딩	"	"	208	11,000	82. 11. 25
34	현대건축집성 (6) 내부공간디자인	"	"	209	13,000	83. 6. 20
35	현대건축집성 (7) 20세기의 건축	"	"	323	18,000	87. 7. 25
36	현대건축집성 (10) 관공서 건축	현대건축 연구회 역	22×30.5 국배판	211	12,500	86. 5. 20
37	현대건축집성 (11) 주택건축 (1)	"	"	189	10,000	82. 6. 30
38	현대건축집성 (12) 주택건축 (2)	"	"	185	11,000	86. 4. 30
39	현대건축집성 (13) 상공업건축	"	"	221	12,500	86. 5. 20
40	UIA 현상특집 회교문화센터	나상기 역	31×31변형 국배판	520	25,000	85. 2. 20
41	UIA 디테일 1	현대건축 연구회 역	26×36.5	59	3,500	83. 6. 20
42	GA 디테일 2	"	"	59	3,500	83. 6. 20
43	GA 디테일 3	"	"	59	3,500	"
44	GA 디테일 4	"	"	59	3,500	"
45	GA 디테일 5	"	"	59	3,500	"
46	건축디자인요소	김부규편저	"	341	18,000	80. 4. 15